

법무부 인권법안

1. 인권법(안), 1998.9. 법무부
2. 인권법의 성격과 권한등에 관한 쟁점검토, 1998.10. 법무부
3. 인권법(안), 1998.11. 법무부
4. 인권법(안)의 주요내용, 1999.2.9. 법무부
5. 인권법(안), 1999.2.9. 법무부
6. 법무부 수정안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C 3-2	45

# 인 권 법 (안)

1998. 9.

법 무 부

## &lt; 목 차 &gt;

## 第1章 總 則

- 第1條 【目的】
- 第2條 【基本方針】
- 第3條 【定義】
- 第4條 【國家機關의 義務】
- 第5條 【法務部의 役割】
- 第6條 【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 등의 役割】
- 第7條 【國民의 義務】
- 第8條 【適用範圍】

## 第2章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 第9條 【人權侵害行爲】
- 第10條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 第11條 【差別事由】
- 第12條 【差別行爲】
- 第13條 【人種侮辱】
- 第14條 【性騷弄】
- 第15條 【差別行爲의 禁止】

##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 第1節 設立 및 業務

- 第16條 【設立】
- 第17條 【事務所】
- 第18條 【定款】
- 第19條 【業務 등】

- 第20條 【地位】
- 第21條 【年例報告書 提出】
- 第22條 【國家機關 등의 協力】

## 第2節 組織 및 運營

- 第23條 【理事의 任免 等】
- 第24條 【理事長의 職務】
- 第25條 【理事會의 構成 및 機能】
- 第26條 【監事】
- 第27條 【人權委員의 資格 및 任免 等】
- 第28條 【委員長의 職務】
- 第29條 【委員의 缺格事由】
- 第30條 【委員의 身分保障】
- 第31條 【全體委員會 및 小委員會의 構成】
- 第32條 【全體委員會 및 小委員會의 管掌事項】
- 第33條 【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 第34條 【除斥, 忌避, 回避】
- 第35條 【事務處의 設置】
- 第36條 【資格詐稱의 禁止 等】
- 第37條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 第3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第39條 【委員會의 組織 · 運營等】

## 第3節 人權侵害行爲등의 調査 및 處理

- 第40條 【委員會의 調査對象】
- 第41條 【陳情의 方式】
- 第42條 【陳情의 却下】
- 第43條 【調査의 開始】
- 第44條 【調査의 目的】

- 第45條 【調査의 方法】
- 第46條 【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 第47條 【陳情의 移送】
- 第48條 【調査의 中止】
- 第49條 【合意勸告】
- 第50條 【調停節次의 開始】
- 第52條 【調停의 效力】
- 제53조 【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 第54條 【陳情의 棄却】
- 第55條 【告發 및 搜查依賴】
- 第56條 【決定의 通知】
- 第57條 【警察署留置場 등의 視察】
- 第58條 【勸告등의 公表】
- 第59條 【措置結果등의 通報】
- 第60條 【人權狀況分析報告書】
- 第61條 【準用規定】

#### 第4章 人權團體

- 第62條 【人權團體의 業務】
- 第63條 【人權團體의 登錄】
- 第64條 【秘密漏泄禁止】

#### 第5章 國家의 支援 등

- 第65條 【公務員등의 派遣】
- 第66條 【出捐金 및 補助金의 支給등】
- 第67條 【國·公有財産의 無償貸付등】
- 第68條 【寄附金品 受領】
- 第69條 【事業計劃書의 提出등】

#### 第6章 罰則

第70條 【罰則】

第71條 【過怠料】

附 則

第1條 【施行日】

第2條 【設立準備】

##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 및 差別이 없는 社會를 具現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方針】 ① 이 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第1次的인 책임을 진다.

1. 人權意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
3.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迅速한 調査와 救濟
4. 差別行爲에 대한 迅速한 調査와 救濟
5. 其他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必要한 措置

② 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이행에 관하여 國家의 活動을 監視하고 그 活動이 充分하지 아니할 경우 ①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第3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等”이라 함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治療監護所, 少年院, 少年分類審査院을 말한다.
3.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保護·收容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시설을 말한다.
4. “人權團體”라 함은 人權에 관한 相談·教育·調査·研究 등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目的으로 활동하는 團體를 말한다.

第4條 【國家機關의 義務】 國家機關은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에 따

라 人權教育 및 弘報,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개선,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法務部の 役割】 法務部長官은 第4條의 國家機關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支援 및 그 活動狀況 分析
4. 人權團體 및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個人의 保護 및 育成

第6條 【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 등의 役割】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大韓民國 領域外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를 豫防하고 그 被害救濟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教育部長官은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 障礙人, 高齡者, 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行爲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雇傭의 促進과 勤勞條件의 向上을 통한 勤勞者의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差別行爲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 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여성인 社會參與擴大 및 能力開發과 性差別 解消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其他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講究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7條 【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人權의 意味와 重要性을 인식하고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適用範圍】 ① 이 법은 大韓民國 領域內에서 발생한 內國人  
과 外國人에 대한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大韓民國 領域外에서 발생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人權侵  
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에 관하여 적용한다.

## 第2章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第9條 【人權侵害行爲】 이 법에서 “人權侵害行爲”라 함은 檢察, 警  
察, 國家安全企劃部, 矯正機關等, 保護觀察所,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  
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한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法律에서 규정한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行하는 者, 軍  
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과 軍務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에  
소속된 職員이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權限을 濫用하여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2. 사람을 暴行 또는 脅迫하는 행위
3. 사람에게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拷問하는 행위
4.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을 妨害하  
는 행위
5.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侵害  
하는 행위
6.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漏泄하는 행위
7.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8. 警察署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舍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多數人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第10條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第9條에 規定된 公務員, 司法警察  
官吏의職務를 行하는 者, 軍人, 軍務員 및 職員은 人權侵害行爲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差別事由】 이 법에서 “差別事由”라 함은 性別, 宗教, 年齡, 障待, 社會的 身分, 出身學校,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容貌 등 身體的 條件,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人種 또는 皮膚色을 말한다. 出産 또는 妊娠을 이유로 한 差別은 性別에 基한 差別로 본다.

第12條 【差別行爲】 이 법에서 “差別行爲”라 함은 合理的인 理由없이 差別事由에 基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特定한 사람(特定한 人들 的 集團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대한 優待를 差別行爲의 範圍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이 법에서도 差別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募集, 採用, 教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外의 金品 支給,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있어서 特定한 人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人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人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4. 其他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特定한 人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第13條 【人種侮辱】 第12條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特定한 人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4條 【性戲弄】 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인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者에게 性과 관련된 言動을 하여 그로 하여금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는 性別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5條 【差別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差別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6條 【設立】 ①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를 調査·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효과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委員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事務所】 ① 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委員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8條 【定款】 ① 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關한 사항
4. 業務에 關한 사항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全體委員會 및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1. 內部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② 委員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9條 【業務 등】 ①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研究 및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3.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에 대한 調査와 處理
  4.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 支援
  5. 警察署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 多數人保護施設에 대한 視察 및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6. 人權團體 및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해 活動하는 個人과의 協力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 ② 委員會는 第1項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등 協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委員會가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勸告를 하거나 意見を 表明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여야 한다.

第20條 【地位】 ①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人事 등 組織 運營에 필요한 事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③ 委員會는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內部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21條 【年例報告書 提出】 ① 委員會는 每年 2月 末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報告書를 大統領에게 提出하고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에 대한 報告書 提出은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22條 【國家機關 등의 協力】 ①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眞摯히 協助하여야 한다.

②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 第2節 組織 및 運營

第23條 【理事의 任免 등】 ① 委員會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1人 以內의 理事를 둔다. 이사는 當然職理事와 選任理事로 구분한다.

② 選任理事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한다. 選任理事의 任免 및 缺格事由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理事長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任理事 中에서 選任한다.

④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⑤ 大統領은 選任理事를 任命함에 있어 法曹界, 女性界, 勞動界 등 사회의 各 분야를 代表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選任理事 中 2人 以上을 女性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⑦ 理事長을 포함한 選任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⑧ 任期가 滿了된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그 後任者가 任命된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⑨ 當然職理事의 數와 任期 등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4條 【理事長의 職務】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5條 【理事會의 構成 및 機能】 ① 委員會에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人權委員의 任免提請
2. 監事의 選任
3. 豫算 및 決算
4. 定款의 變更
5. 財産의 取得 및 變更
6. 法令이나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사항

第26條 【監事】 ① 監事は 理事會에서 選任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監事は 委員會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③ 監事は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7條 【人權委員의 資格 및 任免 등】 ① 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 以內의 人權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을 둔다.

② 委員長과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한다.

1. 社會的 信譽이 높고 人權에 關한 識見과 經驗이 있는 者로 主要 社會團體로부터 推薦을 받은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0年 以上 있던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 이상 또는 이에 相當한 職에 10年 以上 있던 者
4. 3級 以上 公務員의 職에 5年 以上 있던 者
5. 人權委員會의 職員으로서 10年 以上 근무한 者

③ 委員長은 常任으로 하고, 委員長이 아닌 委員중 2人을 常任으로 한다.

④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중 3人 以上을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命하여야 한다.

- ⑤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중 2人 以上을 女性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 ⑥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⑦ 任期가 滿了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된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⑧ 委員長과 委員은 理事를 兼任할 수 없다.

第28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한다

- ②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③ 委員長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29條 【委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委員長 및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 ② 委員長 또는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인히 退職된다

第30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長 또는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礙로 職務遂行이 顯著히 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1條 【全體委員會 및 小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에 人權委員 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體委員會를 둔다.

- ② 委員會에 常任委員 1人, 非常任委員 3人으로 구성되는 小委員會를

들 수 있다.

③ 小委員會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 1名 以上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32條 【全體委員會 및 小委員會의 管掌事項】 ① 全體委員會는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全體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다만 第25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은 제외한다.
2. 全體委員會의 從前 議決例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全體委員會에서 處理하도록 決定한 사항
4. 기타 全體委員會에서 스스로 處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全體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33條 【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 全體委員會의 議事は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小委員會의 議事は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4條 【除斥, 忌避, 回避】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자가 當該 陳情의 當事者(陳情人,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當該 陳情의 當事者의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全體委員會의 議決을 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결정하기에 相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全體委員會의 議決로 결정한다.

③ 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事由 또는 第2項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35條 【事務處의 設置】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두며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6條 【資格詐稱의 禁止 等】 ①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理事, 監事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委員會의 委員, 理事, 監事 또는 職員이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업무처리중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 委員會의 委員, 理事, 監事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까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第84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39條 【委員會의 組織·運營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節 人權侵害行爲등의 調査 및 處理

第40條 【委員會의 調査對象】 ① 委員會는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에 關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로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행위에 關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重大한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가 있다고 認爲한 相當한 根據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1條 【陳情의 方式】 ①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陳情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陳情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趣旨와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

② 警察署 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 및 多數人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保護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警察署,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 소속의 公務員 및 多數人保護施設 소속의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許容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公務員과 職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를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2條 【陳情의 却下】 ① 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發生한 날로부터 1年이 經過한 경우. 다만, 申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查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明白히 虛偽이거나 理由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取下한 경우. 다만,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이 取下되더라도 被害者가 그 陳情取下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陳情의 趣旨가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反하는 경우
  8.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明白히 인정되는 경우
- ② 委員會는 第1項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체없이 그 處理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43條 【調査의 開始】 ① 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內容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4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第44條 【調査의 目的】 ① 委員會의 調査는 人權侵害行爲와 差別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니 國家機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個人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不當하게 干渉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5條 【調査의 方法】 ① 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

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提出要求. 다만, 陳述書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出席을 요구하여 陳述를 聽取할 수 있다.
2. 鑑定人의 指定 및 鑑定의 依頼
3.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 施設, 團體 등에 대하여 關係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 또는 제출된 資料나 物件의 領置
- ② 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資料나 物件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된 장소에서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陳述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實地調査를 받는 機關, 施設,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物件을 領置할 수 있다.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當該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⑥ 委員會의 調査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全體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調査를 公開할 수 있다.

第46條 【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 委員會가 第45條第1項第3號, 第2項 및 第4項의 規정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實地調査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자료나 물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나 物件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1. 法令에 의한 公務上의 秘密
2. 공개할 경우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重

대한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資料나 物件

3.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物件으로서 공개할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進行중인 犯罪搜查나 繫屬중인 裁判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否이나 生活의 平穩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矯正機關等과 搜查機關의 효율적인 運營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物件의 새출을 요구하거나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7條 【陳情의 移送】 ① 委員會는 陳情에 關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과 同一한 事案에 關하여 裁判이 繫屬중이거나 搜查가 進行중인 때에는 그 陳情을 當해 法院 또는 搜查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國家機關 및 第2項의 搜查機關은 移送받은 陳情과 關된 事件의 處理結果를 遅延없이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48條 【調査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 사유로 調査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中止할 수 있다.

第49條 【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과정에서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의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50條 【調停節次의 開始】 ① 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陳情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 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 調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1條 【調停】 ① 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內容이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事情을 查察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同一 또는 類似的한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의 再發防止를 위한 措置

2.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 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⑤ 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 以内に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2條 【調停의 效力】 ①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 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稱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

다.

제53조 【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①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에 해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施設·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1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勸告하거나 意見を 表明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改善을 勸告하거나 意見を 表明할 수 있다.

③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機關인 所屬機關 등이나 監督機關의 長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勸告를 하거나 意見を 表明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또는 機關·施設·團體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4條 【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事實이 아닌 경우
2.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別途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5條 【告發 및 搜查依賴】 ①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依賴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56條 【決定의 通知】 委員會는 第42條第1項 및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 第5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頼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57條 【警察署留置場 등의 視察】 ① 委員會는 人權實態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委員으로 하여금 警察署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 및 多數人保護施設을 視察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全體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58條 【勸告등의 公表】 ① 委員會는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의 내용,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결음하는 決定, 第5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나 意見表明,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및 搜查依頼와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가 制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등의 내용을 公表함으로써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이 侵害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全體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個人의 姓명을 匿名으로 하는 등 個人의 私생활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치결과등의 내용을 公표하여야 한다.

第59條 【措置結果등의 通報】 ① 第19條第3項, 第53條第1項, 第2項



및 第5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搜查依賴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의 長이나 檢察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그 措置結果 등의 내용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2) 第19條第3項, 第5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報함에 있어 委員會의 勸告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60條 【人權狀況分析報告書】 法務部長官은 每年 3月 31日까지 第19條第3項, 第53條第1項, 第2項 및 第55條 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와 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나 措置計劃 등을 綜合하여 人權狀況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1條 【準用規定】 委員會가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第44條 乃至 第53條, 第55條, 第56條, 第58條, 第59條를 準用한다.

#### 第4章 人權團體

第62條 【人權團體의 業務】 人權團體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相談
2. 人權教育 및 弘報
3. 人權問題에 관한 調査·研究
4. 人權政策에 관한 建議
5.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한 事業

第63條 【人權團體의 登錄】 ① 人權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에 登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人權團體는 그 活動을

하기에 적합한 資産과 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第64條 【秘密漏泄禁止】 人權團體의 業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자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5章 國家의 支援 등

第65條 【公務員등의 派遣】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과견요청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所屬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과견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과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과견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과견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6條 【出捐金 및 補助金の 支給등】 ① 國家는 委員會의 設立, 施設, 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を 支給한다.

② 國家는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人權團體의 健全한 育成·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を 交付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 및 補助金の 支給·交付, 使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7條 【國·公有財産의 無償貸付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委員會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

產을 委員會에 無償으로 貸付 또는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와 使用·收益의 內容,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8條 【寄附金品 受領】 ① 委員會 및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人權團體는 個人 또는 法人이 寄附하는 金品을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委員會 및 人權團體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價額 및 品名을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은 이를 受領한 委員會 및 人權團體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第69條 【事業計劃書의 提出등】 ① 委員會 및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を 交付받는 人權團體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書類를 法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每會計年度別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
2. 每會計年度別 歲入歲出決算書

② 法務部長官은 委員會 및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を 交付받는 人權團體의 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 第6章 罰 則

第70條 【罰則】 ①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에 관한 虛偽의 事實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0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70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71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法律의 規定 기타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者

2. 法律의 規定 기타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資料나 物件을 提出한 者

3. 法律의 規定 기타 正當한 이유없이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 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3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4)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알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5)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6)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 法務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內에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理事會에 事務를 引繼한다.

⑤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 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인원·기호	자료명
	3-2	38

人權委의 性格과 權限등에 관한 爭點檢討

1998. 10.

法 務 部

# 1.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인권법은 헌법적 법률이고,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기존의 헌법기관을 감시·견인하는 것이므로 그 위상은 ~~헌법기관들보다~~ 실질적으로 상위에 있어야 함  
*있어*
-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면 그 위상 저하로 기존 국가기관을 감시하는데 한계

## < 검토 >

### 인권위의 보편적 성격과 위상

-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대체기구가 아닌 보충기구임
  - 원래 인권위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shortcomings)'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임.
  - 다시 말해,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 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이 인권위에 있는 것임.
- ※ 국가 인권보장기능의 '틈새'의 예 : ①수사·형집행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정신병원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국가기관에서의 적발이 어려우며 ③차별행위는 보통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수사대상이 아님 (단,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차별은 처벌규정 있음 :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인권위의 위상은 정부기관 등을 감시·보충하는 기구  
이므로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정부기관과의 단선  
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인권위의 설립형태가 법인이라고 하여 그  
위상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외국 인권위의 경우

- 외국 인권위는 모두 기능상 기존 국가기관의 보충  
기구임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한  
차별행위를 조사, 구제함
  -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南阿共 :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지만 구속력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조정·관계기관에 이송·고발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 외국 인권위의 독립성
  - 설립형태가 국가기구이든 특수법인이든 불문하고  
독립성 보장됨
- 외국 인권위의 설립근거
  - ▲ 국가기구형
    - 필리핀 : 헌법
    - 캐나다, 인도 : 법률(인권법)
    - 인도네시아 : 대통령 명령



▲ 특수법인형

- 영국, 호주, 뉴질랜드 : 법률(인권법)

- 南阿共 : 헌법

※ 南阿共에서 소위 과거사(과거의 대량적 인권침해사건) 청산을 담당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이나 한시적인 기구이고, 南阿共에는 이와는 별도의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

< 참고사항 >

美國과 日本은 人權委가 없고 법무성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직접조사

· 미국 법무성 민권국에서는 250명의 검사와 300명의 직원이 연방법위반 인권침해행위 조사

·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에서는 3명의 검사와 248명의 직원이(법무대신이 위촉하는 14,000명의 인권옹호위원과 협력하여 인권침해행위 조사

□ 국민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한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南北 대치 등 현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일본과 같이 법무부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여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 그러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임

-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별도의 인권위 설립)

- 100대 국정과제(인권법제정 및 인권위 설립)

-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

- 인권위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고

- 외국 입법례

- UN에서 인권위 운영에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인권위는 법인임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권보장의 '틈새'를 감시·보충하고, 정부와 인권단체와의 架橋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는 인권위를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

###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인권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기구형태가 바람직
- 법인의 직원이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 검토 >

- 우리나라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 公務員 증원과 豫算 부담

- 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 감원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공무원 증원과 예산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음 (국가기구로 할 경우 민간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바자회, 후원의 밤 행사, 서적·비디오 등의 유상출간등이 불가능하여 예산부담이 가중됨)

○ 같은 公務員들의 인권침해를 감시, 적발하는데 한계

- 동료의식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어려움
-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하기가 곤란

○ 人權지도자의 참여 제한과 인권위의 활동 제약

- 정부조직의 일부가 되어 대외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 국가공무원법 전반이 적용되어 인권지도자의 인권위 참여가 제약되므로 여러계층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권위의 구성원칙에도 위배됨

○ 「감사원」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국가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어 기존 국가기구의 위축과 업무혼선으로 갈등 야기

-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어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국민고충처리위」는 차별에 기한 행정처분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여성특위」·「고용평등위」등은 성차별개선, 고용 관련 차별행위 조정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어 人權委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그 기능이 중복됨

○ 검찰, 경찰, 안기부와의 기능중복과 혼선 초래

- 인권침해, 즉 기본권침해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 경찰, 안기부라도 기능중복과 업무혼선 초래
- 이 경우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 안기부를 능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될 소지가 있음

□ 법인이 조사하는 경우의 실효성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은 국가기구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에 달려 있음(법인으로 설립된 호주, 뉴질랜드등의 인권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사와 결정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인권법 시안은 국민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찰등 수사기관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출석불응에 대한 제재(과태료) 규정을 둠

### 3.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 - 인권위원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

####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민간단체, 노동계 등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 법무부장관이 이사의 임명제청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인권위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임

#### < 검토 >

##### 인권법 시안 내용

- 법무부장관은 일부 이사의 임명제청권만 있을 뿐, 인권위원은 이사회에 의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인권위원 임명권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 국가기구 형태

- 캐나다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의 추천)
- 필리핀 : 대통령 임명
- 인도 : 대통령 임명(수상, 하원의장, 내무장관, 상·하원 야당총재, 상원 부의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 인도는 법무부가 따로없고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가 법무부기능을 담당

- 인도네시아 : 대통령 임명 (인권위원들의 추천)

○ 특수법인 형태

- 영국 인종평등위원회 : 법무부장관 임명
- 호주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 추천)
- 뉴질랜드 : 총독 임명(법무부장관 추천)
- 南阿共 : 대통령 임명(의회 추천)

□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물을  
인권위원회에 임명하는 방안의 문제점

- ① 이 경우, 인권위원회가 실제로 각 단체(자기를 추천해 준 단체)를 대변하게 되므로 인권위 본래기능이 변질되어 정치단체화할 우려가 있고,
- ② 추천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간에 나눠먹기식 선임으로 무자격자가 인권위원회에 선임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 ③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인물이 인권위원들중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현실을 간과한 과잉행위로 정부 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 ④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도 민간단체가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입법례가 없음

□ 법무부 시안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선임이사의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

- 법무부 시안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선임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인권위원을 임명제청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함
- 인권위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원의 임명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자질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 있음
- 그런데, 정부내 인권옹호기능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이므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인권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사의 임명제청권을 부여한 것임
  - ※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사무를 掌理한다
- 당연직 이사 4명중 법무부차관 이외 3명은 여성특위 상임위원 및 노동부등 타 부처의 차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이 없고, 선임이사 7명에 관하여도 여성계, 노동계, 인권단체등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그 선임제청을 할 것임
- 인권위의 독립성은 정부에게 업무감독권이 있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인데 『국민인권위원회』에는 다른 일반법인과 달리 정부의 업무감독권을 배제 하였음(시안 제20조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규정)
  - ※ 소비자보호원은 재경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으며 (소비자보호법 제49조),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법률구조법 제35조), 인권위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

#### 4.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법무부 시안은 인권위의 조사방법으로 임의조사권만을 인정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함

##### < 검토 >

##### 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검찰의 산하기구화

-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됨. 검사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인권위가 거꾸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인권위가 검사 지휘를 받게 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되어 검찰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인권법 시안은,

▲ 조사의 방법으로, 진술서 제출등 서면조사권, 당사자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등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現場調査權까지 인정하였으며

▲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등 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 과태료(1,000만원이하) 부과대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②위원회의 자료·물건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③위원회의 현장조사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을 거부·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기관의 협력의무로서, 위원회의 자료제출등 요청에 대한 성실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둠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권위의 도덕성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기가 어렵고, 소환 불응시에는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임

※ 「국민고충처리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음에도 업무수행

강제수사 관련 외국의 입법례

○ 국가기구형

- 캐나다, 인도의 인권위가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음

○ 특수법인형

- 南阿共의 인권위가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음

※ 이들 영미법계 국가는 영장청구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가능

5.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주는 문제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상위에 있는 준헌법적기구이므로 인권위에 '시정권고권'이 아닌 '시정명령권'을 부여 하라고 주장

※ 「준법서약제」와 같이 정부의 대내외적 위신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되풀이 하여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권을 주라고 주장

< 검토 >

시정명령의 성격

○ 우리나라 법률상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상 민간인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향후 행위 중지, 범위반사실 신문공표등) 부과
-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근로자의 원직복귀, 임금 지불) 부과
-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여부 결정됨
- 그러나,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인정되는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원의 행정소송 또는 상급관청의 행정심판에서 재판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적극적 이행 명령은 할 수 없음

□ 인권위에 시정명령권 부여할 때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부와 달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이 없는 인권위가 재판절차없이 다른 기관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컨대, 구금시설 재소자의 1인당 거소 평수를 1평에서 2평으로 확장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와 같이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내용의 시정명령인 경우 국가기능에 혼란 초래

- 재야에서 거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준법서약제도」 폐지문제와 같이 정부의 정책을 인권지도자들의 견해만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가최고정책 결정기구화되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보충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임
- 법률상의 기구에 불과한 인권위가 다른 법률상의 기관뿐 아니라 「감사원」과 같은 헌법상의 기구까지 기속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직 체계에 일대 변화가 초래됨
- 정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정부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책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원이 정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됨
- 또한, 인권위가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보유한다면 이는 「제2의 검찰」 겸 「제2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인데 인권위의 본질과 성격상 그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입법례도 없음
- UN총회의 결의안인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도 “인권위는 정부·의회 기타 관계기관에 권고적 차원에서(on an advisory basis) 의견, 권고, 제안, 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인권위 결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인권법 시안은

- ▲ 권고등 인권위의 처리내용公表
- ▲ 인권위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존중의무
- ▲ 위원회의 권고를 受容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이유설명 의무 등을 규정함.

□ 시정명령 관련 외국의 입법례

○ 人權委에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음

※ 호주, 영국 등 대다수의 외국 인권위도 그 결정에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인권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음

※ 캐나다, 뉴질랜드 인권위는 행정법원격인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를 설치하여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의 명령을 하고 있고 이 명령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없음

## 6. 인권위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문제

<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

-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은 인권위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거나 운영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자치를 보장하여야 하며 인권위의 예산이 특정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법무부가 인권위의 예산을 요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UN 권고안과 배치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침